붙임

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개정 전·후 비교표

		······현	행(10-2판)				개정 사유			
٥	유연근무·휴기	ト 등(6쪽)				ㅇ 단계별 유연				
	1단계	1.5단계	2단계 :	2.5단계	3단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
_	기관 부서별 적정비율로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	비율로 기관 무지열 1/3이상 재택근무 등 가면 귀고 지택근무 등				■ 시차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	■ 300인이상 사업장 (제조업 제외) 시차출퇴근제, 점심시간	■ 50인 이상 사업장 (제조업 제외) 시차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		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경에 따라 개정
						자율 시행 	시차제, 재택근무 10%(권고)	제, 재택근무 20% (권고)	재택근무 30%(권고)	
٥	o 회의 및 워크숍, 교육, 연수(7쪽)					ㅇ 회의 및 워크				
	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
	- 500명 이상 참여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-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 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-협의		■ 500인 이상 참 여 시 지자체 사전 신고	■ 대면실시가 불 가피한 경우 소 규모(100인 미만)로 실시	■ 대면실시가 불 가피한 경우 소 규모(50인 미만)로 실시	■ 워크숍, 연수 등 행사 대면실시 금지	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경에 따라 개정			

		현행(10-2편	판)			개정 사유				
ㅇ 소규모 .	모임, 사내 동	아리 활동,	취미모임, 회식	l (7쪽)	ㅇ 소규모 모	.임, 사내 동아				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	
크 착용 등 의무화 - 자체적 방약 하여 관할 협의 - 비필수적인 1.5단계에서		100인 이상 의 모임행사 금지*	50인 이상 의 모임행사 금지*	10인 이상 의 모임·행사 금지*	■ 방역수칙 준수 ■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	■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■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	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■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※ 예방접종자 포함 최대 8명 가능 -미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	■ 3인 이상 시적모임 금지 * 18시 이전(4인), 18시 이후(2인) 가능 ■ 각 지자체 모임 기준 준수 ※ 가정 및 식당, 카페에 한해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6명 가능 -미완료자는 4명(2명) 포함 가능	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경에 따라 개정	
o 발열·호·	홉기증상 모니	터링(9쪽)			ㅇ 의심중상(발열·호흡기중				
< 사회적	거리두기 단계	#별 체온 및	호흡기 증상	확인 주기 >	< 사회적 기	 리두기 단계별				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사회적 거리두기 단계	
매일	매일 1일 2회 이상 1일 2회 이상 * 필요 시 검사결과				■ 1일 ⁻	회	변경에 따라 개정			
		·								

	현행(10-2판)			개정 사유			
○ 통근버스(15쪽)				ㅇ 통근버스(17즉				
< 사회적	거리두기 단계	별 조치기준	>	< €				
1단계 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경에 따라 개정
차량 소독(매일), 탑승자는 1단계 + 기침예절 탑승자 준수 및 기록 마스크 착용	1.5년계 +	음식물 섭취	2.5단계 + 한자리 띄어 앉기	★량매일소독마스크착용음식물섭취금지	■ 1단계와 동일	■2단계+탑승 자 기록	■ 3단계 + 한자리 띄어 앉기	

※ 이 외, 항목 순서 변경, 오탈자 등 수정하여 개정하였음